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목 : 한국은행 부산본부, 지역내 위기징후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전략·주력산업 금융지원 강화

-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역내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「중소기업 지원자금」(약 7,500억원 규모로 상세 내용은 3페이지 <참고> 참조)을 지역 경제상황에 더욱 적합하게 운용하고자 「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을 3.1일부터 개정·시행할 예정

① 위기징후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원(신규)

- 한국은행 부산본부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난해 6월 체결한 위기징후지역*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위기징후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일반지원부문** 지원대상에 포함

* 중소기업 밀집지역 가운데 부산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(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)에서 위기징후 “주의” 또는 “심각” 단계로 결정한 지역

**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부문은 전략, 특별, 일반 등 세 부문으로 구성

- 이에 따라 위기징후지역 소재가 확인*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을 통한 대출금리 감면**이 가능해짐

* 보다 자세한 확인 절차는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

** 한국은행 부산본부 자금지원 대상여부 등에 대한 확인은 거래은행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최종 대출금리는 해당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등 여타 조건을 감안하여 거래은행이 결정

<다음 페이지에서 계속>

② 지역 전략산업 및 주력산업 지원 강화

○ 부산광역시가 신규 인증한 「전략산업* 선도기업」을 일반지원부문 지원대상에 포함

* 최근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개편(5년 주기) 연혁 :

7대(2019~23) : 스마트해양, 지능형기계, 미래수송기기, 글로벌관광, 지능정보서비스, 라이프케어, 클린테크

9대(2024~28) : 디지털테크, 에너지테크, 바이오헬스, 미래모빌리티, 융합부품소재, 라이프스타일, 해양, 금융, 문화관광

— 부산시가 지난 1.26일 **9대 전략산업 선도기업**으로 선정한 **90개사**가 **신규 지원대상에 포함**됨(2월말 현재 전략산업 선도기업 인증기업은 총 281개사이며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)

○ 부산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「2023년 부산지역산업 진흥계획」을 반영하여 **전략지원부문의 지역주력산업을** 기존 4개 산업*에서 **3개 주축산업(초정밀소재부품, 저온고압에너지저장공급시스템, 실버케어테크)**으로 조정**

* 지능정보서비스, 친환경미래에너지, 라이프케어, 첨단융합기계부품

** 해당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) 등은 5페이지 <별첨> 참조

○ **전략지원부문의 '지역전략산업'인 화물운송업 지원 강화**를 위해 화물운송업의 세부 업종 중 **내륙수상 및 항공 화물운송업**을 지원대상에 포함

□ 앞으로도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지역내 경제상황 및 정책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필요한 중소기업에 원활히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한편 **운용기준 또한 적시에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**

문의처 : 업무팀 과장 최지영, 조사역 서문주

Tel : 240-3911, 3915, Fax : 240-3917, E-mail : bokbuc2@bok.or.kr

“한국은행 부산본부의 보도자료는 한국은행 부산본부 홈페이지(<http://www.bok.or.kr/busan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 부산본부

<참고>

한국은행 부산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

□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은행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실적의 일정 한도(최대 50%) 내에서 저리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

- 지원대상 : 벤처기업, 지역전략산업 등 영위 중소기업(서울특별시 소재 제외)
- 지원규모 : 7,579억원(2024.2월 기준)
- 지원금리 : 대출취급 금융기관이 결정
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자금의 금리는 2024.2월 현재 2.0%
- 지원기간 : 운전자금 1년이내(기간연장 가능)

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 흐름



부문별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

지원부문	지원대상	선정기준	지원한도 ¹⁾
전략지원 부문 ²⁾	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(부산광역시 소재 기업)	-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○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(KSIC 26429) ○ 레이더,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(KSIC 27211) ○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(KSIC 27216) ○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(KSIC 28119) ○ 축전지 제조업(KSIC 28202) ○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(KSIC 29142) ○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KSIC 30) ○ 선박 및 보트 건조업 (KSIC 311) ○ 도로화물 운송업(KSIC 493) ○ 해상운송업(KSIC 501) (단, 외항 및 내항 여객운송업(KSIC 50111, 50121)은 제외) ○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(KSIC 502) (단, 내륙 수상 여객업, 항만내 여객운송업(KSIC 50202)은 제외) ○ 항공화물 운송업(KSIC 512) ○ 화물취급업(KSIC 5294) ○ 정보통신업(KSIC 58~63) ○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KSIC 70~73) (단, 법무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KSIC 711, 712), 회사본부(KSIC 7151), 수의업(KSIC 731)은 제외) - 「부산테크노파크」가 발급한 확인서류 제출기업 - 「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」가 발급한 확인서류 제출기업 - <별첨>의 '부산시 지역주력산업'을 영위하는 부산시 소재 기업	업체당 20억원 (40억원)
	농림수산업 관련기업	-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표준산업분류표상 01~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업자·농어업법인	

지원부문	지원대상	선정기준	지원한도 ¹⁾
특별지원 부문 ²⁾³⁾	경기부진 및 경기민감 업종 영위기업 (부산광역시 소재 기업)	-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²⁾ ○ 음식·숙박업(KSIC 55~56) ○ 도소매업(KSIC 45~47) ○ 여행업(KSIC 752) ○ 여가업(KSIC 90~91) (단,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(KSIC 912)은 제외)	10억원 (20억원)
	벤처기업	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 해당업체 (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)	7.5억원 (15억원)
혁신기업	-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 제13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(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) -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(제조업 영위기업으로서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) - 신기술(NET) 또는 신제품(NEP) 마크 획득업체 (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)		
녹색기업	- 아래의 해당 업체중 제조업(KSIC 10~33) 및 수도·하수및폐기물처리·원료재생업(KSIC 36~38)을 영위하는 기업 (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) ○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○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8조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○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6조의2에 의거 환경부가 선정한 녹색기업 ○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(우수재활용제품 인증)가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		
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(부산광역시 소재 기업)	-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(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) ○ 운수 및 창고업(KSIC 49~52) (단,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해당하는 업종, 육상 여객 운송업(KSIC 492), 외항 및 내항 여객운송업(KSIC 50111, 50121), 주차장 운영업(KSIC 52915)은 제외)		
전입기업	- 타 지역으로부터 부산광역시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(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)		
수출관련기업	-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(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)		
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	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34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인증 마크를 획득한 기업		
명절 및 재해자금 등	- 명절, 자연재해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		

지원부문	지원대상	선정기준	지원한도 ¹⁾
일반지원 부문 ³⁾	기타 지원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해, 거래업체 부도, 경영악화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등 본부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- 부산광역시로부터 「전략산업 선도기업」으로 인증된 기업 - 「부산 서비스 강소기업」으로 선정된 기업 -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- 「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부산광역시가 인증한 예비사회적기업(비영리 법인·단체는 제외) -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위기징후 “주의” 또는 “심각” 단계 지역 소재 확인서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 	7.5억원 (15억원)

주: 1) () 내는 은행 대출취급액 기준
2) 전략 및 특별지원부문은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
3) 특별 및 일반지원부문은 고신용(1등급~3등급)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

<별첨>

부산시 지역주력산업

주력산업	분류코드(KSIC)	세부업종
초정밀 소재부품	25999	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
	29142	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
	29294	주형 및 금형 제조업
	29299	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
	29133	탭, 밸브 및 유사장치제조업
저온고압 에너지저장 공급시스템	28119	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
	28123	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
	29132	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
	29176	증류기,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
실버케어테크	25122	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
	27192	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
	22299	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
	27199	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
	27213	물질 검사,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
27215	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	